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정·등록 취소 전문기관 등의 재지정·등록 제한〉

■ 김동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9352호, 제2209353호, 제2209354호,
제2209355호, 제2209362호, 제2209363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3
III. 검토의견	7
1.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8
2.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8
4.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
※ 참고자료	26
1. 발명교사 인증 제도 현황	26
2.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제도 현황	27

I. 제안경위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 의 자 : 김동아의원 등 14인
2. 발의연월일 : 2025. 3. 26.
3. 회부연월일 : 2025. 3. 27.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 의 자 : 김동아의원 등 13인
2. 발의연월일 : 2025. 3. 26.
3. 회부연월일 : 2025. 3. 27.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 의 자 : 김동아의원 등 13인
2. 발의연월일 : 2025. 3. 26.
3. 회부연월일 : 2025. 3. 27.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1. 발 의 자 : 김동아의원 등 13인
2. 발의연월일 : 2025. 3. 26.
3. 회부연월일 : 2025. 3. 27.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 의 자 : 김동아의원 등 14인
2. 발의연월일 : 2025. 3. 26.
3. 회부연월일 : 2025. 3. 2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 의 자 : 김동아의원 등 14인
2. 발의연월일 : 2025. 3. 26.
3. 회부연월일 : 2025. 3.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특허청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디자인등록출원 심사 업무의 일부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전문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일부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면서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받을 수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0조).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교원의 발명교육 전문성 강화 및 발명교육 전문교원의 양성을 위하여 연수와 재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수한 발명교육 역량을 갖춘 자를 심사하여 발명 교사 인증을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발명교사 인증 관리에 필요한 일부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명교사 인증을 받은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하면서 인증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재인증받을 수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해당 기업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런데, 인증이 취소된 기업이 재인증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하면서 인증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인증받을 수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안 제11조의2).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현행법은 특허청이 산업재산진단 업무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일정 시설 및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산업재산진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산업재산진단기관의 관리에 필요한 일부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재산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면서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재지정받을 수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등).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특허청이 상표등록출원 심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외부기관에 상표검색, 상표분류 등 상표심사업무의 일부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 특허청으로부터 관련 업무를 의뢰받아 수행하려는 자는 상표전문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법상 상표전문기관 관리에 필요한 일부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표전문기관으로 등록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면서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등록할 수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52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전자지문을 이용하여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하는 업무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자를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정이 취소된 기업이 재지정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경우 이

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원본증명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 9조의4 등).

Ⅲ. 검토의견

6건의 개정안은 각각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 「상표법」에 따른 전문기관 등록,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본증명기관 지정,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명교사 인증,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 등록·지정·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일정 기간(1년¹⁾ 또는 2년²⁾) 이내에는 다시 등록·지정·인증을 받을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이하에서는 각각의 법률안 별로 보다 상세한 사항을 검토함.

-
- 1)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명교사 인증
 - 2)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 「상표법」에 따른 전문기관 등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본증명기관 지정

1.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개정안은 각각 「디자인보호법」·「상표법」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등록과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등록을 하여 전문기관 지정·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지정·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60조,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52조).

[표 1] 조문대비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제60조(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생략) <u><신설></u> ②·③ (생략)	제60조(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전문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제52조(상표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① (생략) <u><신설></u>	제52조(상표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

②·③ (생략)	된 전문기관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등록을 할 수 없다.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	---

현행 「디자인보호법」·「상표법」은 전문기관 지정(「디자인보호법」)·등록(「상표법」)과 관련하여 각각 ① 법률에서 전문기관을 지정·등록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등록을 받은 경우, 지정·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는 지정·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③ 시행령에서는 지정·등록기준을 규정하면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등록을 받아 전문기관 지정·등록이 취소된 법인 또는 그 법인에서 취소 당시에 임원으로 있던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법인으로서 그 지정·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 2] 전문기관 지정·등록 및 취소 관련 조문

구 분	주요내용
디자인 보호법	제59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특허청장은 디자인등록출원을 심사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선행디자인의 조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제60조(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특허청장은 제59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

구 분	주요내용
	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9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4조(전문기관의 지정기준) ① 특허청장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u>다만, 법 제60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전문기관 지정이 취소된 법인 또는 그 법인에서 취소 당시에 임원으로 있던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법인으로서 그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1. 제5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할 것 2. 제5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 및 조직을 확보할 것 3. 제5조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임직원 및 시설·장비에 대한 보안체계를 갖출 것 4. 임직원 중 다른 기관에서 「변리사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겸하는 사람이 없을 것
상표법	제51조(상표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특허청장은 상표등록출원의 심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1. 상표검색 2. 상품분류 3. 그 밖에 상표의 사용실태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의뢰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전문기관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52조(상표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① 특허청장은 제51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51조제6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상표법 시행령」 제10조(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등) ① 특허청장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전문기관으로 등록해야 한다. <u>다만, 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문기관 등록이 취</u>

구 분	주요내용
	<u>소된 법인 또는 그 법인에서 취소 당시에 임원으로 있던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법인으로서 그 등록이 취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u> 1. 법 제51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할 것 2. 법 제51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 및 조직을 확보할 것 3. 업무 수행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업무처리기준을 갖출 것 4. 업무와 관련된 비밀의 누설 방지를 위한 보안체계를 갖출 것

그런데,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정·등록 금지 규정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으로서 법률유보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므로 전문기관으로 지정·등록 받을 수 없는 사유는 법률에 명시적으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각각의 개정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등록을 받아 지정·등록이 취소된 경우 지정·등록 취소 후 2년 이내에는 전문기관으로 지정·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전문기관의 지정·등록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작용으로서 개정안과 같이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부합하고 행정행위의 합법성을 보장하며 법적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특허청**은 하위 법령에 규정된 전문기관 지정·등록 제한 사유를 법률로 상향하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전문기관 지정·등록 취소 당시에 임원으로 있던 사람이 소속된 전문기관에 대한 제재’도 같이 포함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임원은 법인 운영에 있어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하면서 법인을 대리하여 업무를 집행한다는 점과 법인에 대한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경우 소속 임원에 대해 결격사유를 적용하는 입법례들³⁾이 있는 점을 참고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측량업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측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이 법이나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87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이나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87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52조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이 취소(제47조제1호에 대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다.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해당 국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다.

1. 2. (생략)
3.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말소 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대표자를 포함한다.

가. ~ 라. (생략)

4. ~ 6. (생략)

한편, 상표전문기관의 임직원 및 대표에 대한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동 사유에 해당하면 전문기관의 등록을 취소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김성원의원 대표발의안⁴⁾, 권향엽의원 대표발의안⁵⁾)과 개정안과 유사하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표전문기관·디자인전문기관으로 지정·등록을 하여 지정·등록이 취소된 경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지정·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⁶⁾·「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⁷⁾(이상 이인선의원 대표발의)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개정안과 병합하여 심사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의안번호 제2205812호(2024.11.22. 발의)

5) 의안번호 제2205882호(2024.11.26. 발의)

6) 의안번호 제2209182호(2025.3.20. 발의)

7) 의안번호 제2209183호(2025.3.20. 발의)

2.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등).

[표 3]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조(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등) ① ~ ③ (생략) <u><신설></u> ④·⑤ (생략)	제17조(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제1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진단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⑤·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업재산진단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3. (생략) ② (생략)	제31조(과태료) ① ----- ----- -----. 1. 제17조제5항을----- ----- ----- 2.·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현행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⁸⁾ 특허청장으로 하여금 일정한 시설·인력을 갖춘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또는 산업재산진단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산업재산진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제17조제1항), 산업재산진단기관이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② 산업재산진단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하거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도록 하고 있으며(제17조제3항), 특허청 고시(「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⁹⁾)에서는 지정이 취소된 기관은 취소 후 1년간 산업재산진단기관으로 재지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8)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등) ① 특허청장은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의 산업재산진단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춘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또는 산업재산진단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산업재산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진단기관이 실시한 산업재산진단에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특허청장은 진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산업재산진단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④ 이 법에 따른 진단기관이 아닌 자는 산업재산진단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지정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관리감독 등) ④ 특허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확인결과, 영 제10조(진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의 행정처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필요시 경고 및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지정이 취소된 기관은 향후 1년간 진단기관으로 재지정할 수 없다.

그런데, 특허청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정 금지 규정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으로서 법률유보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므로 산업재산진단기관으로 지정을 제한하는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아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정 취소 후 1년 이내에는 산업재산진단기관으로 다시 지정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작용으로서 개정안과 같이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부합하고 행정행위의 합법성을 보장하며 법적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특허청은 산업재산진단기관의 재지정 금지 규정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부합하므로 동의하나, 현행 고시(「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¹⁰⁾를 감안하여 ‘산업재산진단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와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지정이 취소된 경우’도 개정안과 같이 1

10)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구분 없이 지정이 취소된 경우 향후 1년간 진단기관으로 재지정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년간 재지정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이와 관련하여 개정안과 같이 발의된 5건의 다른 법률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등을 받아 전문기관 지정 등이 취소된 기관’으로 사유를 한정하고 있으며, ‘산업재산진단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와 달리 행위에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 지정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 등).

[표 4]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의4(원본증명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① ~ ③ (생략) <u><신설></u>	제9조의4(원본증명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생략)	④ 제3항제1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원본증명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⑤ 특허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원본증명기관이 제4항을 위반하여 원본증명업무에 관한 기록을 인계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을 인계할 수 없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⑥ 제3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 기준 및 절차, 제4항에 따른 인계·인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5항을----- ----- ----- ----- ----- ----- -----.
	⑦ -----제5항에----- ----- -----.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0조(과태료) ① ----- ----- -----.
1. 1의2. (생략)	1. 1의2. (현행과 같음)
2. 제9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의4제6항을-----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특허청장으로 하여금 전자지문을 이용하여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하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영업비밀 원본 증명기관(이하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제9조의3¹¹⁾), 원본증명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원본증명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위반하여 원본증명업무를 한 경우’ 등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9조의4¹²⁾).

1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원본증명기관의 지정 등) ① 특허청장은 전자지문을 이용하여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하는 업무(이하 “원본증명업무”라 한다)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자를 중소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이하 “원본증명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설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허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원본증명기관에 대하여 원본증명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원본증명기관은 원본증명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전자지문의 추출·등록 및 보관
2. 영업비밀 원본 증명 및 원본증명서의 발급
3. 원본증명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관리 및 설비의 보호
4. 그 밖에 원본증명업무의 운영·관리 등

⑤ 원본증명기관 지정의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그런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아 지정이 취소된 기업이 재지정을 시도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아 원본증명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원본증명기관은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함으로써 전자문서의 진본성을 보장하고,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며 이는 기업 간 거래나 법적 분쟁에서 신뢰성을 높이는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원본증명기관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유사 입법례¹³⁾ 및 「특허법 시행령」¹⁴⁾ 등 지식재산보호 관련 법령을

제9조의4(원본증명기관에 대한 지정명령 등) ③ 특허청장은 원본증명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본증명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원본증명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위반하여 원본증명업무를 한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원본증명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원본증명업무를 중단한 경우
4. 제1항에 따른 지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항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3)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일정 기간 재지정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이에 대해 특허청은 유사입법례를 참고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제9조의4제3항제1호)뿐만 아니라 원본증명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위반하여 원본증명업무를 한 경우(같은 항 제2호)에도 재지정 제한 필요성이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개정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함.

[표 5] 조문대비표

개 정 안	특허청 수정의견
제9조의4(원본증명기관에 대한 지정명령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제1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원본증명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제9조의4(원본증명기관에 대한 지정명령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제1호 <u>및 제2호</u> 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원본증명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⑤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각각 해당 안전관리 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14) 「특허법 시행령」

제8조의2(선행기술 조사 등에 관한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등) ①특허청장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행기술의 조사 또는 특허분류의 부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이하 “조사·분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조사·분류 전문기관의 등록이 취소된 법인 또는 그 법인에서 취소 당시에 임원으로 있던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법인으로서 그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개정안은 각각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명교사 인증,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인증을 받을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9조,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1조의2).

[표 6] 조문대비표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개정안
제9조(교원 등의 전문성 제고) ① ~ ⑤ (생략) <u><신설></u> ⑥·⑦ (생략)	제9조(교원 등의 전문성 제고)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5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인증을 받을 수 없다. ⑦·⑧ (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 ① ~ ④ (생략) <u><신설></u> ⑤·⑥ (생략)	제11조의2(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우수기업은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다. ⑥·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현행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명교육법」”) 제9조¹⁵⁾는 특허청장으로 하여금 우수한 발명교육 역량을 갖춘 자를 심사하여 발명교사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제4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등 그 인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5항).

한편, 현행 「발명진흥법」 제11조의2¹⁶⁾는 특허청장으로 하여금 직

15) 「발명교육법」

제9조(교원 등의 전문성 제고) ① ~ ③ (생략)

④ 특허청장은 우수한 발명교육 역량을 갖춘 자를 심사하여 발명교사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⑤ 특허청장은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7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⑥ 특허청장은 제5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⑦ 인증의 기준, 절차, 유효기간,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 ① 특허청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보상제도

무발명보상제도¹⁷⁾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제1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등 그 인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4항).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아 인증이 취소된 교사나 기업이 다시 발명교사나 우수기업 인증을 시도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아 발명교사 인증이나 우수기업 인증이 취소된 경우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인증을 받을 수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발명교사 인증 및 우수기업 인증은 각각 국가가 특정한 기준을 충

의 활성화를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우수기업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특허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유효기간을 정하여 인증을 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은 인증받은 우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증받은 우수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우수기업 인증의 기준, 절차, 재인증, 유효기간,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 기업이 종업원의 직무발명(발명진흥법§2, 2호)을 승계하는 경우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여 혁신발명을 촉진하는 제도

족하고 있다는 점을 공적으로 인증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고
공익을 도모하는 것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러한
인증을 받은 경우 개정안과 같이 인증 취소 외에 일정 기간 재인증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인증제도의 공익성을 강화하고 실효성
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발명교사 인증 및 우수기업 인증은 각각 발명교육의 확산 및 직무
발명제도의 진흥을 도모하는 진흥 시책으로서 개정안과 같이 재인증
의 제한을 두는 경우 진흥의 효과가 저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특허청 의견**¹⁸⁾¹⁹⁾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논의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문 의 처

02)6788-5458

18) (발명교사 인증 관련) 2024년부터 발명교육이 본격 도입되어 발명교사 수요 확대가 예상되나, 실제 역량있는 교원은 전 초등학교원(57.4만 명)의 0.17%*에 불과하여 발명교육 확대를 위해 오히려 인증 취득을 장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인증 제한기간 규제의 신규 도입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발명교사 인증제 유효인원수('24) : 995명(명인 29명, 1급 53명, 2급 913명)

19) (우수기업 인증 관련) 벤처기업·이노비즈기업 확인 인증,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우수물류기업 인증 등 제도 진흥 목적의 다른 주요 인증제도에서도 인증 취소에 따른 제한기간 부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재인증 제한기간 규제의 신규 도입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참고 1

발명교사 인증 제도 현황

□ 인증 및 인증취소 현황

- '24년말 현재 발명교사 인증제 유효인원수는 995명(명인 29명, 1급 53명, 2급 913명)으로 전체 초등학교원(57.4만 명)의 0.17%에 불과

< 인증 유효인원 >

등급	'13~'17	'18	'19	'20	'21	'22	'23	'24	합계
명인	11	4	3	4	2	2	3	-	29
1급	-	4	19	6	13	6	2	3	53
2급	-	174	169	139	119	157	89	66	913
계	11	182	191	149	134	165	94	69	995

※ (참고1) 급수별(명인/1급/2급) 중복 획득 및 재인증 인원 모두 포함

※ (참고2) 발명교육법 시행령 개정('22년 12월)에 따라 '22년까지 인증 취득교사 1,612명 중 인증기간이 유효한 832명은 일괄 유효기간 연장(~'27.12.10.) 실시 및 780명은 만료

- 현재까지 인증이 취소된 경우는 없음

□ 발명교육의 이수실적 및 실무경력 조건

- 각 인증 등급별로 이수실적 및 실무경력 조건이 상이

등급별 인증 기준(제2조제1항 관련)									
등급	필수요건				선택요건(2항목 충족)				비고
	정교사자격증	발명교육 이수실적	발명교육 실무경력	선행 등급	발명대회 입상지도	발명교육 강의실적	연구·발명실적	지식재산 능력시험	
명인	1급	180시간 (집합교육 90시간 이상)	7년	1급 발명교사	30점	40시간	30점	700점	구술
1급	2급	120시간 (집합교육 60시간 이상)	3년	-	15점	20시간	15점	600점	필기
2급	2급 (소지 예정자*)	60시간 (집합교육 30시간 이상)	-	-	-	-	-	-	필기

□ 발명교사 인증 취득 시 이점

- 규정화된 혜택은 없으나, 우선 지속 확산 중인 발명교육에 대한 역량을 보유 여부를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효과가 있고,
 - 각 지역교육청별로 인증 교사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존재

지역	혜택 내용
경남	창원교육지원청영재교육원 발명영재반 강사 선발 시 발명교사 인증 교원 우선 임용
대전	버드내중학교 기술(발명) '25년도 교사 초빙 요건으로 발명교사인증 자격 포함
경기	경기항공고 발명센터 지도교사 선발기준에 발명교사인증 자격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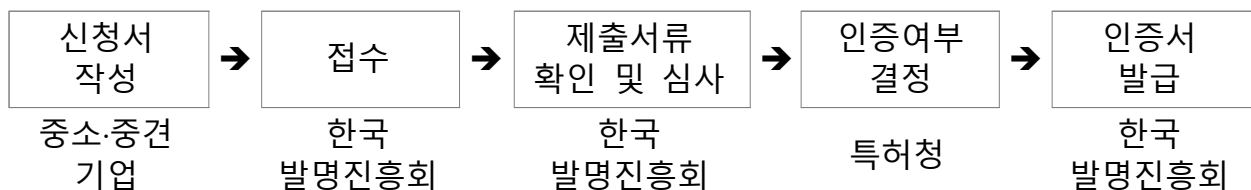
참고 2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제도 현황

□ 인증제도의 신청 요건 및 절차

- 직무발명의 승계, 보상 등에 관한 사내 직무발명규정*을 보유하고,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무발명 보상 사실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함
 - 사업 수탁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접수, 심사, 인증서 발급업무를 담당 중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 운영방식 >



- *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미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 이에 따른 보상규정 등을 의미

□ 기업의 직무발명규정 도입 비율

- 기업이 사내 직무발명규정을 도입한 비율은 약 47.6%로 조사*
 - * 출처 : '24년 지식재산활동조사 결과(한국지식재산연구원, '24. 12.)

< 기업 규모별 직무발명규정 도입률 >

구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전체
도입률	79.4%	75.8%	45.8%	47.6%

※ 최근 2년간 특허·실용신안·디자인 2건 이상 출원기업 기준

□ 인증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의 심사처리기간 단축*(우선심사), 4~9년차 등 록료 20% 추가감면, 정부지원사업 선정 가점 등**을 지원하고 있음
 - * 심사처리기간 : (우선심사) 우선심사 결정 후 약 2~3개월 / (일반심사) 약 16개월
 - ** 특허청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특허로P&D) 사업 등 가점, SGI 서울보증 보험료 10% 할인 등

□ 인증기업 및 인증취소 기업수 현황

- 매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400~500여개 기업이 인증을 받고 있으며, '24년말 인증이 유효한 기업은 총 942개社임
- 현재까지 인증이 취소된 기업은 없음